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법인/개인 사업자, 단체용)

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표시는 필수 입력 /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인증서 발급 불가/ 고객, 인가담당자 서명 필수)

인증서 구분	☒ 용도제한용 인증서 (보건복지분야, 무료)		☐ 범용 인증서 (유료)		
업체정보					
*업체명	우리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대표자명	홍길동
*사업장 주소	(우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PDC C동 5층 (삼평동)		*업종	의료업	
			*업태	서비스	
*사업자 유형	☐ 일반 사업장 ☐ 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인증서 담당자					
*이름	홍길순	*부서명	총무팀	*전화	02-1234-1234
*휴대폰	010-1234-1234	*팩스번호	02-1234-4321	*E-mail	woori@hankook.com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위임장은 반드시 공란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아래 대리인이 당사 임원 또는 직원임을 인정하며 공동인증서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정보	*이름	홍길순	*생년월일	90.03.01
	*전화번호	02-1234-1234	*휴대폰번호	010-1234-1234
	*부서	총무팀	*재직기간	2013.3.5 ~ 현재

한국정보인증㈜의 이용약관 및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인증서비스를 신청하며,
본 신청서에 작성된 개인정보의 공동인증서비스 관련업무 (신청/ 발급/ 재발급/ 환불/ 갱신)의
활용 및 공동인증서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년 1 월 3 일

이름 우리 병원



* 날인 필수 (법인인감/ 개인인감 날인)

- 대표자 본인 :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
- 대리인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 제출서류안내 (신청서 인감 날인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 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신청 : 공동인증서 신청서 (날인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대표자 신원확인증표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대리인 신청 : 공동인증서 신청서 (날인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대리인 신원확인증표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사업자), 대표개인인감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 1부 (최근 6개월 이내)
- 공동대표 신청시
 - 대표자 전원 신청 : 공동인증서 신청서 (전원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대표자 전원의 신원확인증표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대표자 일부 신청 : 공동인증서 신청서 (전원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방문 대표자 신원확인증표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방문대표를 제외한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 대리인 신청 : 공동인증서 신청서 (전원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서 원본 (최근 6개월 이내)
-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각자대표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에 각자대표 미 표기시 각자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필요 (ex.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고객 기입란] 방문고객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기입란] 등록대행기관	
방문일	성명	자필서명	성명	자필서명
2023.1.3	홍길순	홍	대면확인자	서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의거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말합니다.
- ②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보인증"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가입자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기관을 말합니다.
- ③ "가입자"라 함은 "정보인증"과의 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정보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④ "이용자"라 함은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합니다.
- ⑥ "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휴대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 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⑦ "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⑧ "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⑨ "비대면 신원확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에서 지정한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으로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⑩ "전자서명인증서비스"라 함은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말합니다.
- ⑪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⑫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합니다.
 1. 가입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정보, 내외국인 구분정보
 2.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로서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식별정보
 3.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DI):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암호화된 식별정보
 4. 기타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에 관한 정보 등
- ⑬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에서 "정보인증"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하여 본인확인을 요청하고, "정보인증"이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⑭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효력 및 변경]

- ① "정보인증"은 본 약관의 내용을 가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인증"의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②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③ 가입자가 개정약관이 공지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의 수단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규정]

- ①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② “정보인증”은 가입자 및 가입 신청자가 “인증업무준칙”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2장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

제5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정보인증”은 다음과 같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 인증서 발급(신규, 재발급, 갱신)
 -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 부가서비스
 - 시점확인서비스(TSA)
 - 본인확인서비스(UCPID)
 -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

제6조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의 효력]

- ①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범용인증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입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용도	유효기간
개인	범용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	1년/3년
	용도제한용	은행 업무 정부 민원 업무(단, 전자입찰 등 제외)	1년
		기타	개별 계약에 따름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	1년/3년
	용도제한용	개별 계약에 따름	1년
서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인증	1년/3년

- ②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범위 및 용도에 따라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로 서명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거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6조의2 [인증서의 신청]

인증서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2. 가입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정보인증”의 고객센터센터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합니다. 단, 인증서 신청 시 가입 신청자는 “정보인증”이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으로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신청자는 방문 대신 “정보인증”의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신원확인 정보를 제출합니다.
3.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처리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 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동 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서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6조의3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제한]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3. 인증서 요금 미납
4.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5. 사고정보나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6. 가입 신청자가 심신상실, 중증 정신질환과 같은 사유로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부재하거나 제한된 것을 인지한 경우
7. 가입 신청자의 의사능력 결여가 서류, 판결, 감정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8. 가입 신청자가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와 같이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인증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6조의4 [인증서의 이용 제한 및 중지]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실종,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가입자가 심신상실, 심신미약, 중증 정신질환과 같은 사유로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부재하거나 제한된 것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의사능력 결여가 서류, 판결, 감정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4. 가입자가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와 같이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인증업무를 방해한 경우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피한정후견인이 그 동의 없이 인증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6.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7.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정보인증”이 가입자가 타인명의로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해킹, 스미싱, 명의도용과 같은 부정행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9. “정보인증”이 가입자의 인증서가 타인에게 도용되는 경우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10. “정보인증”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정보인증” 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11.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12.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3. 해킹, 명의도용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제공에 동의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②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을 “정보인증”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③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내역을 수집한 가입자 E-mail정보로 통지합니다.
- ④ 가입자는 “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는 “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거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거부해제 이후 제1항의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정보인증”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8조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제공]

- ①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 받아 제공합니다.
- ② “정보인증”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망을 연결하고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시마다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연계정보를 요청하여 전달받습니다.
- ③ 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며, “정보인증”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시간]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인증”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제10조와 같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단]

- ①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기관의 시스템 장애 또는 운영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이용기관과의 계약 종료 등 해당 이용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 ③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에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3 장 인증서 요금 등

제11조 [인증서의 종류 및 요금]

- ① "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② "정보인증"은 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인증"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3조 [환불]

- ① 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7조제4호에 따라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③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본 조 제1항의 환불기간을 7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우,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가입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필요 경비(송금수수료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제14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 ①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인증서 요금을 결제하면 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② "정보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는 가입자의 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④ 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4장 당사자 의무 등

제15조 ["정보인증"의 의무]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2.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3.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안전조치
4.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 신원확인
5.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6.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본인확인정보를 가입자가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
7.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

제16조 [가입자의 의무]

1. 목적에 맞는 인증서 선택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3.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4.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5. 인증서 재발급 또는 폐지 사유 발생 시 재발급 또는 폐지 신청
6.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7조 [손해배상 및 면책]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해킹, 스미싱, 명의도용을 당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와 같이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8조 [재판관할]

- ① 본 약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③ 전자서명법 제22조(분쟁의 조정)에 따라 분쟁 조정 시 전자문서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수집되는 정보는 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써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공 : 인증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인증서 유지, 관리,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통지,
- 결제 및 정산 : 인증서비스의 발급 비용의 결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영수증 발행
- 고충처리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 인증서 효력정지, 긴급폐지 등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인증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또는 담당자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 대리인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또는 담당자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대리인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 재직기간,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항목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브라우저 정보(브라우저 명, 버전), OS정보

3. 보유기간

- **인증서 효력이 소멸 된 날부터 5년간 보관. 단, 인증서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30일 보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개인정보의 홍보 마케팅 이용 동의 (선택)

한국정보인증은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개인 정보를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전달, 공동인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파악 등에 활용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개인정보의 홍보 마케팅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각종 할인 이벤트, 당첨 이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집항목 :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수집목적 : 홍보 및 이벤트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선택)

한국정보인증은 개인정보 홍보, 마케팅 동의에 동의해주신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고자 정보통신망법 제50 조 1항에 따라 고지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각종 할인, 이벤트 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매체 : 이메일, 휴대폰 번호

- 광고성 정보 발송 시간 : 08:00 ~ 21:00

☐ 이메일 ☐ 휴대폰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 동의 ☐ 동의하지 않음